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 선고 2016가단510356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변론 종결2016. 9. 22.

판결 선고2016. 10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은 56,799,072원 및 그 중 56,641,662원에 대하여 2015. 11. 26.부터 2016. 7.

15.까지는 연 8%의,

나. 피고 B, C, D,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56,641,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

11. 26.부터 2016. 7. 15.까지는 연 5%의,

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인정근거

(1) 피고 A, C, D,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(2) 피고 B 다통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, 갑 6호증의 1 내지 3,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

2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 B은, 중소기업은행(이하 '소외 은행'이라 한다)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조차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,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30% 정도로 평가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금을 감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(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17452 판결,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2다30892 판결 등 참조), 피해자인 원고 또는 소외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피고 A 등의 범죄행위에 공모·가담한 피고 B이 원고 또는 소외 은행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.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 B은 형사재판에서 중소기업은행에게 5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로 삼아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피고 B이 중소기업은행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, 설령 피고 B이

중소기업은행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원고로부터 보전 받지 못하고 남은 잔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 이를 다시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는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.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임수희

별지